

(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-참조2)

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

의안 번호	212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09. 3.

발 의 자 : 홍석환 의원 등 10인

1. 제안이유

- 「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」를 제정하여 법률 고문으로 하여금 의회와 관련있는 각종 법령의 해석,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.

2. 주요내용

- 의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법률고문 위촉(안 제2조제1항)
- 해촉사유 명문화 (안 제2조제3항)
- 법률고문의 직무(안 제3조)
 - 의회 또는 위원회 법령자문
 -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 수행 및 법령 해석 등
- 소송비용 및 수당 (안 제4조)
 - 「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」의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 기준 준용

3. 관계규정

-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

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 법률고문(이하 "법률고문"이라 한다)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촉 및 해촉) ① 의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
2.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때
3.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필요한 때
4. 다음의 사유로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때
 - 가. 불변기일 도과
 - 나. 소송당사자측과의 담합
 - 다. 법령 고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
5.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
6.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
7.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

제3조(직무)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처리한다.

1.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·규칙안 및 청원 등 의안과 관련되는 법령 사안의 자문
2.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의 수행
3.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령해석

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성남시의회 의장을 당사자로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.

제4조(소송비용 및 수당)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및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「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」의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.

제5조(사건 실적부 비치)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할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지방의회의 기능이 점차 증대되어가는 현상에서 법률 고문으로 하여금 의회와 관련 있는 각종 법령의 해석,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
- 조례 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38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 제2항에서 “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” 라고 규정하고 있어
- 동 조례안을 제정 운영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